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 
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6조제1항중 “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”을 “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에 제5호를, 동조에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월드컵경기장

⑤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·운영한다.

별표 1의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동대문씨름장” 및 “효창운동장내 테니스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명칭	시설명	기능	위치
서울월드컵 경기장	주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
	보조경기 장	축구, 각종행사	“

별표 2 중 “체육경기”란의 명칭을 “체육행사”로 하고,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배구장(씨름장)” 및 “역도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

운동장별	체육행사	체육이외행사
서울월드컵 경기장	주경기장	230,000
	보조경기장	70,000

별표 3의 “시설별”란 중 “씨름장” 및 “수영장(실외)·(대인)·(소인)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6 “음향시설”의 산출기준란 중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을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  
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
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중

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  
서 추천한 2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  
함하여”를 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  
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  
감이 추천하는 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  
을 포함하여”로 한다

안 제35조 제3항 중

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 
되”를 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  
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 
연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**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  
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 
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  
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  
진흥위원회(이하 “문예진흥위원회”라 한다)  
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 
항을 심의·자문한다

-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 
계획에 관한 사항
-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 
의 지정·취소에 관한 사항
- 기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회의안건에  
따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 
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 
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  
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자

<p>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.</p> <p>③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 회의 중요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.</p> 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위원장) ①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</p> <p>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재직위원과 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회의통보) 시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3장 제목 “전문예술단체의 지정운영”을 “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육성”으로 한다.</p> <p>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3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범위)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·상법·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</li> <li>2. 국단·뮤지컬단·관현악단·무용단·합창단·오케라단·실내악단·창극단·국악단·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</li> <li>3.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</li> </ol> <p>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.</p> <p>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4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취소)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</p>	<p>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·단체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·단체를 시지정 전문예술법인·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·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,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 시지정 전문예술법인·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5조의 제목 및 본문중 “단체”를 “법인·단체”로 한다.</p> <p>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건축주”라 한다)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미술장식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·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,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8조의2(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)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 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</p>
---	--

<p>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 본문중 “영 제25조제2호”를 “영 별표1 의2제1호”로 한다.</p> <p>제22조 앞에 “제6장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”를 삽입한다.</p> <p>제22조제1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. 미술장식품과 건축물과의 조화</li> <li>8. 미술장식품 가격의 적정성</li> <li>9. 기타 미술장식품의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</li> </ul> <p>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36조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12조”를 “제11조제1항·제12조 및 제23조의2”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, 공모를 통한 제작·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 관리업무</li> <li>4.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보존 관리업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기금지원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</li> <li>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</li> <li>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</li> <li>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개발 및 보급</li> <li>5.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</li> <li>6.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li> </ul> <p>제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</p>	<p>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36조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12조”를 “제11조제1항·제12조 및 제23조의2”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, 공모를 통한 제작·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접수 관리업무</li> <li>4.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보존 관리업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기금지원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경비의 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</li> <li>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</li> <li>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</li> <li>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프로그램개발 및 보급</li> <li>5.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</li> <li>6.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li> </ul> <p>제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</p>
---	--